



2020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2020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CONTENTS

chapter
01

대체교사 지원사업안내

04

chapter
02

어린이집 이용방법

12

chapter
03

대체교사 지원사업 궁금증

30

chapter
04

부록

38



chapter

01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봐요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인력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 대체교사 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인력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2,000원/일)

※ 인건비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
됩니다.

잠깐.

대체교사 지원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아요!

어린이집

- 1 보수교육,
연차휴가,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긴급사유 등
보육 공백 발생시

- 2
- 온라인 신청
 - 유선 · Fax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유선 · Fax



육아종합지원센터

- 3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고려

- 4 대체교사 배치

- 5 배치 결과 공지



어린이집

- 6 온라인 평가 (종료 후 5일 이내)
만족도 등 평가

대체교사에 대해 알아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소개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철(7월, 8월), 보수교육 주간,
결혼이 많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보육업무 범위가 궁금해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대체교사는 전반적인 해당 반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등·하원 지도, 영·유아보육, 일지 작성, 교실과 담당 구역 청소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놀이 지원을 위해 보육계획은 담임교사가 작성해 주세요. 대체교사는 보육계획을 바탕으로 흥미나 요구를 파악하여 놀이 흐름에 따라 융통적으로 놀이를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09:00~18:00(월~금,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시간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채용
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 관련안내

대체교사의 휴게시간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체교사와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신설 2012.2.1.〉

-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방법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시비 지원

| 구분 | | 국·시비 지원 | | |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연가 | 1~5일 1~10일 | |
| | 3 |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 훈련 기간 1일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긴급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수시 신청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 | 유산 (~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신청 | 파견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개월 단위로 전월 1일~10일까지 사전 신청) | | |

• 시비 지원

- 지원기준

-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시 우선 지원(재교육은 지원 제외)
단, 교육 지원 신청이 없을 시 국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
- 신청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

※ 대체교사 인력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갈 경우에 지원됩니다.
담임교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가고,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면 모든 지원비는
환수하게 됩니다.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사유 대체교사 신청기간

1개월 단위로 전월 1일~10일 사전 신청

▼ 긴급사유 대체교사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보육공백(교육, 연차 등)에 대해서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하되 갑작스러운 병가와 가족상, 모성보호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한 보육 공백의 경우는 유선·fax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근무환경개선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가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조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2020년 보육사업안내」 445p.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한 대체교직원
-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출처 : 「2020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55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체교사 인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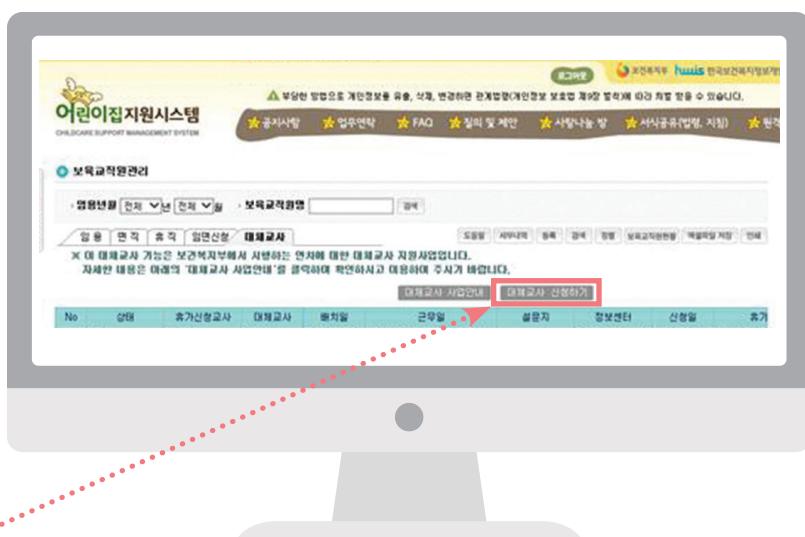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력 지원은 대상과 지원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르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 사유 : 보수교육, 본인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긴급사유(아동학대, 가족상, 본인 질병 등·사고, 모성보호 등)





※ 신청사유가 보건복지부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 사유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시 우선 지원, 갑작
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기타사유)을 포함한 국비지원
사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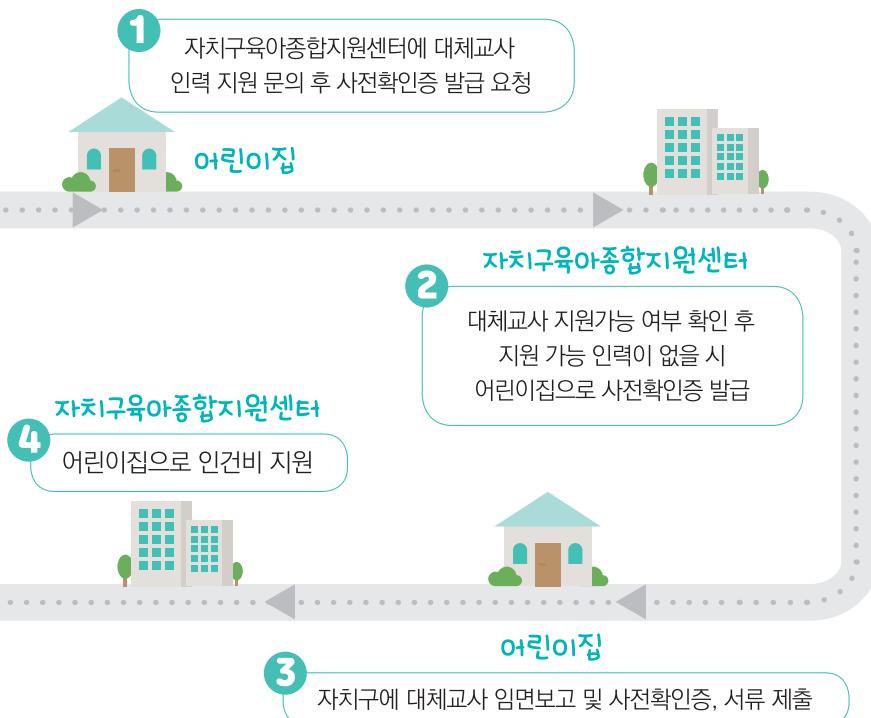
▶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 신청 

- 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 사유 : 아동학대 후속조치, 가족상, 본인 질병 등·사고, 모성보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교사 허위신청 시 패널티 적용

보육교사의 연차나 교육, 병가, 경조사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 될 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허위 신청으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패널티 적용사유

- 1) 대체교사와 대체교사를 신청한 현 보육교사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 자체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와 이중지원 받은 경우
- 3)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인 경우 신청 가능
- 4)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허위 사유로 신청한 경우 등)

• 패널티 적용

- 1)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 2) 1회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 3)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2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어린이집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대체교사 근무 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내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월간·주간·일일 보육 계획안 등),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체교사가 근무하기 일주일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내서」 양식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정 안내를 할 때 대체교사 정보 및 협조사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 어린이집 안내서(예시) | | | |
|------------------------------------------------|----------------------------------------------------------------------------------------------------|----------------------------------------------------|--|
|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보육교사 | 어린이집 이메일 주소 | 어린이집 점장 담당반별 및 연령 반 (연 ____ 세) | |
| 구 분 | 세 부 내 품 (대체교사를 신경한 교사가 직접 작성 하도록 합니다.) | | |
| 보내는 시 익의사항 (주의사항 및 특성) | • 대체교사에게 전달하고 신설 영유아 (특별한 보호자) 등으로 영유아는 사전체 청소 제공하기 | | |
| 교재교구 (교재교구현시행) | | | |
| 이정 준비사항 | | | |
| 실내 외 어린이집 시설물 이용 방법 | | | |
| 기타 (주간행사일정 등) | | | |
| 어린이집 준비사항 | • 대체교사가 근무하는 반에 영유아에게 이っぽ 표지를 모아 당장으로 보내주시는 경우인 수업준비, 수업진행방법, 자료마련장소, 원이특성과 연락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 자세한 | | |

〈어린이집 안내서〉

보육계획에 따른 놀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계획안 및 놀이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의 놀이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근무 중

첫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대체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린이집의 현황, 대체교사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 내용 등을 이해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 및 논의 되어야 하는 사항

- 어린이집 현황

- ☞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 ☞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

- 대체교사 업무

- ☞ 지원학급 연령 및 특성
- ☞ 영·유아 출석부 및 명단, 개별 특성
- ☞ 일지 및 알림장 작성 안내
- ☞ 학부모와의 관계
- ☞ 등·하원 지도 방법
- ☞ 급·간식 지도 방법
- ☞ 약물 투약 시 주의사항

- 기타

- ☞ 근무 및 휴게시간
- ☞ 그 외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근무 시 유의사항

※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은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지원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



• 대체교사 근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1. ○○어린이집 현황

- 1) 원훈 : 건강한 어린이,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이 바른 어린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 2) 인원 : 영유아 ○○명, 교직원 ○○명(담임교사 ○○명 포함)
- 3) 시설현황
 - 1층 : 보육실(만 0세~만 2세), 조리실, 교사실(보건실), 원장실, 소모품실
 - 2층 : 보육실(만 2세, 만 4,5세), 유희실, 교재실
 - 3층 : 보육실(만 3세, 만 5세), 교재실
 - 실외 : 모래놀이터, 대근육 놀이터, 덧밭
- 4) 등·하원방법 : 도보, 통학버스

2. 대체교사 업무내용

- 1) 담당연령 : 만 4세(○○반, 2층 위치), 유아 ○○명
- 2) 업무내용 : 담당반의 전반적인 보육업무 및 담당 보육실 및 사용공간 청결
 - 등원 전 준비(교실환기, 음용수 준비, 일과 수업준비 등)
 - 담당반의 일과운영: 별지 참조
 - 일과 후 제출서류(보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하원상황표)
- 3) 영유아 개별특성: 별지 참조
- 4) 학부모와의 상담
 - 파트너 교사가 있는 경우 : 영유아 관찰 내용을 파트너 교사에게 알림
 - 파트너 교사가 없는 경우 : 영유아 관찰 내용 중,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은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수첩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임교사와 상의 후 안내



5) 통학버스 등·하원 지도 방법

- 등원 지도 : 명단에 있는 영유아의 등원여부를 확인함(별지 참조).
 - 하원 지도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명단을 확인, 총별 모이는 장소로 이동
- 6) 투약방법
- 투약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투약 가능

3. 근무 및 휴게시간

- 1) 근무기간 : ○월 ○일 ~ ○월 ○일
- 2)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3) 휴게장소 : 1층 교사실 또는 어린이집 유휴 공간
(어린이집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보고 후 휴게시간 사용)

4. 근무 시 유의 사항

- 1) 안전사고 발생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파트너교사, 옆반 교사, 사무실)
 - 일과 운영 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 요청
만 4세 ○○반 교사(원내 203번), 선임교사(원내 100번), 원장(원내 106번)
- 2) 퇴근 전
 - 일과진행 결과에 대하여 주임교사에게 구두 보고
(아동 및 학부모 관련, 어려웠던 일 등)
 - 익일 보육을 위한 준비(수업 관련, 보육실 및 화장실 청소)
- 3) 옷차림
 - 보육활동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
 - 앞치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하여 사용

○○어린이집(02-0000-0000)

 대체교사 근무 후

대체교사가 근무를 마친 뒤, 대체교사를 신청했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 작성은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에서 작성해주시는 설문지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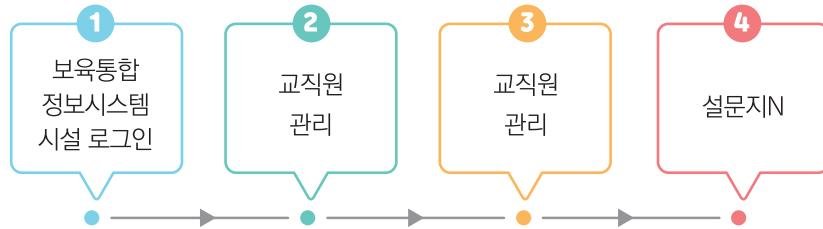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적어주시더라도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 | |
|------------------------------------------------------------------------------------------------------------------------------------------------------------------------------------------------------------------------------------------------------------------------------------------------------------------------------------------------------------|-----------------------------------------------------|-----------------------|
| 설문지 (어린이집방) |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된 대체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단위로 표시해 주세요) | |
| 양현하십니까? ─ 대체교사 지원사업, 익 참여해 서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이번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과 향후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에 나가는 데 귀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 |
| 1.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행으로 □ 표시해 주십시오) | | |
| 1. 설문지 작성자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②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input type="checkbox"/> ④ 가정 <input type="checkbox"/> ⑤ 아동학부모 <input type="checkbox"/> ⑥ 민간 <input type="checkbox"/> ⑦ 법인단체 등 | | |
| 2. 어려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국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 민족학교 <input type="checkbox"/> ③ 종교 <input type="checkbox"/> ④ 기관 <input type="checkbox"/> ⑤ 시설학부모 <input type="checkbox"/> ⑥ 환경 | | |
| 3. 어려이집 현황 <input type="checkbox"/> ① 1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01 ~ 2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201 ~ 4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401 ~ 8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800명 이상 | | |
| 4. 보육교사 수 <input type="checkbox"/> ① 59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60 ~ 102명 <input type="checkbox"/> ③ 103 ~ 2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201명 이상 | | |
| 5.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은 어떤가요? (□ ① 매우 부정적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② 만족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⑥ 만족 <input type="checkbox"/> ⑦ 보통 <input type="checkbox"/> ⑧ 매우 긍정적 | | |
| 6.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은 어떤가요? (□ ① 매우 부정적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② 만족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긍정적 | | |
| 7. 불만족도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은 어떤가요? (□ ① 매우 부정적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② 만족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 8. 대체교사 지원사업 에 대한 이해도 (□ ① 매우 부정적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② 만족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긍정적 | | |
| 9. 대체교사 지원사업 에 대한 이해도 (□ ① 매우 부정적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매우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② 만족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긍정적 | | |
| 10. 견인사항 (100자 미내) | | |
| ■ 구조설명서와 같이 작성합니다. | | |
| 특성 | 문항 | 우수 ... 부족 |
| | | 5 4 3 2 1 |
| 1. 당장 목표를 실현하고 행정하는가? | | |
| 2. 고의적 역할을 솔직하게 반 문명에 자신의 일도 허락하는가? | | |
| 3. 문답이나 별도로 서 있는나 고의와 의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 | | |
| 4. 업무와 개인적인 목표를 적절히 구별하는가? | | |
| 5. 개인적인 목표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목표로 보호되는가? | | |
| 6. 일상적인 영역에서 능률화 쟁쟁 성적을 풍미하며 노력하는가? | | |
| 7. 영역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는가? | | |
| 8. 영역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는가? | | |
| 9. 영역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는가? | | |
| 10. 영역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는가? | | |

〈설문지-어린이집용〉

◀ 평가지 작성방법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로 신청



※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설문지N이 설문지Y로 표시됩니다.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로 신청



※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업무평가지 미작성이 업무평가지 작성으로 표시 됩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궁금증**

대체교사 지원사업 Q&A



Q1.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무료인가요?

A.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Q2. 긴급 사유에 대해서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서울시 25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사유에 대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A.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중 공휴일은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4.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월의 전월 1일~10일 사전 신청합니다.



Q5.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 한가요?

A. 2020년부터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 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채용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Q6.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A. 교사겸직원장의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10일 입니다.



Q7. 가족상 사유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지원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상은 사유 발생 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가능하며, 지원일수는 사유별 지원가능 일수에 따릅니다. 또한 보육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족상 휴가의 범위와 일수는 어린이집 내부규정을 준용합니다.



Q8.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대체교사를 채용 하려고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할 시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만 60세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Q9.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도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우 다른 환경, 낮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청소나 다른 업무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사전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Q11.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는 출근해서 다른 업무를 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업무를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근무로 간주되어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를 지원받기로 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대체교사지원을 종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지원 중단을 희망할 경우, 먼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협의한 후 지원중단요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종단 할 수 있습니다.



Q13.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 | 팩스 |
|---------------|----------------|-----------|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772-9814~9 | 772-9820 |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 546-1735~7 | 511-1728 |
|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486-3556 | 484-9255 |
|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94-7480~1 | 904-7480 |
|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064-2730~2 | 2064-2733 |
|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851-2834~5 | 851-2846 |
|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467-1827~9 | 467-1880 |
|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859-5678 | 859-5511 |
|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894-2264~5 | 805-1835 |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30-1944 | 930-1945 |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494-3341~2 | 3494-3343 |
|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247-5843~5 | 2237-5801 |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823-4567 | 823-4586 |
|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08-0202 | 305-0006 |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217-9550 | 3217-9551 |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 598-9340 | 2155-8681 |
|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499-5675~6 | 499-7525 |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18-8080 | 918-8083 |
|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 499-0505 | 449-0535 |
|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646-7790~1 | 2646-7793 |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833-6022 | 833-6021 |
|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 749-9673~4 | 749-9675 |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51-3629, 3630 | 351-3649 |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737-0890 | 737-0898 |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263-2626 | 2279-7294 |
|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495-0030~1 | 495-0036 |



chapter

04

부록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타사업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타사업



대체조리원

- **지원대상**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지원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 파견(1,798,400원/월)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 | |
|------|-----------------------------------------------|---------------------|-------|--|
| 1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 | |
| 2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 | |
| 3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 | |
| 4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3일 | |
| | | 유산 | | |
| | | 임산부 건강관리 등 | | |
| 5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 | |
| 6 |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 | |
| 7 | 예비군 훈련 | | 훈련 기간 | |
| | 건강검진 | | | |
| | | | 1일 | |

- **신청방법**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신청기간**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 파견(1,798,400원/월)
- **지원절차**



-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지원 보조사업 우선 신청
※ 국비·시비 동시 지원 불가
-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 ▶ 인건비 지원기준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금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하반기 출생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도육도우미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시비 2시간 추가지원 이외의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 보조교사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기준에 따름,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453~456p 참조

-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19년 12월까지 시비 보조교사를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한하며, 국비지원 보조교사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시비 보조교사를 국비 보조교사로 전환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9년 12월 기준 지원받은 인원수준으로(국비지원 중복 불가) 지원 하나, 이중 국비 보조교사로 전환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1,002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시비 2시간 추가지원 기준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에 2시간 추가 지원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취약보육(야간보육, 다문화 등)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우선지원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인건비 지원 : 월 501천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추가 지원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도우미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당 1명 지원(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외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897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대상

- ☞ 급식(조리)지원 :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급식(조리)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청소 등 지원 가능
-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 취약보육 및 거점형 야간보육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 청소를 주요업무로 하며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등 지원 가능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안내

| 구분 | 보조교사(2시간 추가 지원) | 보육도우미 | 비 고 |
|------|------------------------------------------------------------------------------------------------------------------------------------------------------------------------------------------------------------------------------------------------------|-------------------------------------------------------------------------------------------------------------------------------------------------------------------------------------------------------------------|-----------------------------------------------------|
|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 성범죄경력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제외 |
| 주요역할 | <p>▶ 시비 보조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p>▶ 2시간 추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 역할에 따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락에 따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가능 <p>※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p>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 근로조건 |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 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9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 된 어린이집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인건비 인당 월 1,346,480원(4대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지원기준** : 2개반 당 1명 지원(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 ☞ 담당업무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지원 등 장애아보육
교사 업무지원
 - ※ 운전, 청소, 어린이집장 업무보조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보조는 불가함
-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어린이집과의 근로 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 확정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어린이집 추가 부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 원장 :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 ☞ 보육교직원 : 전체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채용된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지금(평일 8시간 근무 원칙)
※ 월급여 약간연장반 교사는 일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 조리원 : 현원40인 이상 정부지원어린이집
※ 현원이 40인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월까지는 처우개선비 지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지원구분 | | 지원금액 |
|-----------------|-----------------------------------|------------|
| 보육교사 (0~5세반) | 정부지원시설 | 월 195,000원 |
| | 정부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 월 145,000원 |
| | 민간시설 | 월 200,000원 |
| | 방과후교사 | 월 100,000원 |
| 조리원 | 정부지원시설(현원40인 이상) 장애인전문어린이집(전체) | 월 145,000원 |

※ 방과후 어린이집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시에만 방과후교사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조건

- ☞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
으로서 보조금 신청 기준일(매월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일할 정산하지 않음)
-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동 1명 이상 보육)
- ☞ 아동대 교사비율 미 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원

기획·총괄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집필진

김희숙(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장)

나영은(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감수

임수언(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 나무 032-327-6109

©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니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